

의안번호	2210968
의 퇴 인	박정현 의원
회 답 일	2025. 6. 30.
추 계 번호	25A334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농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－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17.2억원, 2028년 217.2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651.6억원(연평균 217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담보물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등록면허세 세수는 2026~2028년간 총 624.0억원(연평균 208.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등 세수는 2026~2028년간 총 27.6억원(연평균 9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농어업인 용자 담보물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-208.0	-208.0	-208.0	-624.0	-208.0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5조제1항)	-9.2	-9.2	-9.2	-27.6	-9.2
합 계	-217.2	-217.2	-217.2	-651.6	-217.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)	○ 농어업인(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포함) 용자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2	안 제15조제1항 (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28. 12. 31.	
---	---	---	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)	○	
2	안 제15조 제1항 (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3년간 발생할 것으로 가정

가.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

□ 개정안에 따른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
○ 향후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연평균액(20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나.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5조제1항)

□ 개정안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적용기한 3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

용하여 추정

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다고 가정하고,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3년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(취득세) 향후 3년(2026~2028년)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없다고 가정¹⁾
 - (재산세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향후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므로 2023년 기준 재산세 감면액(9.2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상호금융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용자 시 용자담보물에 대한 등기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 포함)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
 - 감면액: 등록면허세의 50%
 - 적용기간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- (감면실적)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19년 236억원, 2023년 130억원으로 5년간 총 1,041억원(연평균 208억원) 으로 나타남

[표 2]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추이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누적	연평균액
감면실적	236	252	260	163	130	1,041	20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1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향후 3년간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 없음(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답변자료)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208억원, 2030년 208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624억원(연평균 20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농어업인 용자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근 5년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208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등록면허세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농어업인 용자 담보물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 10조제1항)	-208	-208	-208	-624	-208

나.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5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감면율: 취득세 50%, 재산세 50% 감면
 - 적용기간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- (감면실적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은 2019년 22.0억원, 2023년 9.2억원 등 5년간 총 62.1억원(연평균 12.4억원)으로 나타남
 - (취득세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9년 15.3억원, 2023년 0억원 등 5년간 총 18.5억원(연평균 3.7억원)으로 나타남

- (재산세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은 2019년 6.7억원, 2023년 9.2억원 등 5년간 총 43.6억원(연평균 8.7억원)으로 나타남

[표 4]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누적	연평균
감면실적	22.0	10.4	10.8	9.7	9.2	62.1	12.4
－ 취득세	15.3 ¹⁾	1.5	1.6	0.1	0	18.5	3.7
－ 재산세	6.7	8.8	9.2	9.7	9.2	43.6	8.7

주: 1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정부비축기지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감면실적으로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해당 경우가 통상적으로는 자주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재산세는 2026년 9.2억원, 2028년 9.2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27.6억원(연평균 9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(취득세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며, 최근 취득세 감면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계
 - (재산세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추가 취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 변동소요도 크지 않으므로, 2023년 감면실적(9.2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업무 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(안 제15조제1항)	-9.2	-9.2	-9.2	-27.6	-9.2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